

일·생활·가족(Work-Life-Family)

다 같이 더 가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



장려금 종류		지원 대상	지원 금액																
고용안정	위라벨일자리 장려금 (소정근로 시간단축제)	근로자(주35시간이상, 6개월이상근무)의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(법정임신기 2주)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❶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❷ 근로자 요청으로 주15~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❸ 전자·기계적방식의 근태관리	<table> <tr> <th>임금감소액 보전금</th><th>3개월단위, 지원수준</th></tr> <tr> <td>20만원 이상</td><td>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+ 간접노무비30만원</td></tr> <tr> <td>20만원 미만</td><td>간접노무비30만원</td></tr> </table> *지원한도: 직전연도말 피보험자수의 30%(3~30명) *임금감소액 보전금: 근로시간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	임금감소액 보전금	3개월단위, 지원수준	20만원 이상	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+ 간접노무비30만원	20만원 미만	간접노무비30만원										
임금감소액 보전금	3개월단위, 지원수준																		
20만원 이상	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 + 간접노무비30만원																		
20만원 미만	간접노무비30만원																		
위라벨일자리 장려금 (실근로시간단축제) [공모형]	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※ 소정근로시간: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근로시간 (1일 8시간이내) 실근로시간: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	【지원금액】 단축시행일부터 1년, 1인당 월30만원 【지원한도】 지원대상 근로자의 30% (10명 이하 3명, 최대 100명한도)																	
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[공모형]	【유연근무 장려금】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선택근무, 재택·원격근무, 시차출퇴근제 활용 ※ 시차출퇴근은 육아기(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【일·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】 ❶ 재택·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, 설비, 장비 등을 구입,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❷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※ PC, 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비용은 지원제외	<table> <tr> <th>유형</th><th colspan="2">1개월 지급액</th><th>최대지급액</th></tr> <tr> <td>재택·원격</td><td>15만원 (월 6~11일 활용)</td><td>30만원 (월12일이상)</td><td>360만원</td></tr> <tr> <td>선택근무</td><td colspan="2">30만원 (월 6시간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</td><td>360만원</td></tr> <tr> <td>시차출퇴근</td><td>10만원 (월 6~11일 활용)</td><td>20만원 (월12일이상)</td><td>240만원</td></tr> </table> * 육아기자녀를 둔 근로자 재택·원격, 선택근무는 10만원 추가지원	유형	1개월 지급액		최대지급액	재택·원격	15만원 (월 6~11일 활용)	30만원 (월12일이상)	360만원	선택근무	30만원 (월 6시간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360만원	시차출퇴근	10만원 (월 6~11일 활용)	20만원 (월12일이상)	240만원	
유형	1개월 지급액		최대지급액																
재택·원격	15만원 (월 6~11일 활용)	30만원 (월12일이상)	360만원																
선택근무	30만원 (월 6시간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360만원																
시차출퇴근	10만원 (월 6~11일 활용)	20만원 (월12일이상)	240만원																
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)	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	【지원금액】 월 30만원 * 지원특례: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연속 허용시 첫3개월 월 200만원 【지원금액】 월 30만원 * 사업장 최초~세번째 부여자 인센티브 10만원 추가																	
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(대체인력 지원금)	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산 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시작된 2개월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	【지원금액】 월 80만원 * 단, 인수인계기간(최대 2개월) 월 120만원																	

육아휴직제도	- (육아휴직급여)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 급여로 지급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 - (3+3 → 6+6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)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(통상임금 100%, 200~450만원)
--------	--


 유연근무지원 바로가기


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☐ 서울관악고용복지+센터(www.work.go.kr/seoulgwana) 공지사항 참조
 2024년 고용장려금, 고용노동정책 ▶ 공모사업은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⇒ 고용센터 승인 후 사업 시행시 지원
☐ 문의 : ☎ 1350